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30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정준호

맹성규 • 권칠승 • 윤종군

유준병 • 장철민 • 이훈기

이학영 · 강유정 · 이용우

박홍배 • 김태년 • 박 정

안호영 · 김주영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 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

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제11조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유지"를 "유지 및 통계 작성ㆍ공시"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의 공시)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1.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 2.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 3. 보험급여 결정사항
- 4.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 5.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의학·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다.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업무상 질병조사(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⑤ 공단은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

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질병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및 보관 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 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 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 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3. 제116조제5항과 제6항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기간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	1
한 기록의 관리 · <u>유지</u>	유지 및 통계
	작성 • 공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
	보의 공시) ① 공단은 산업재
	해보상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
	<u>야 한다.</u>
	1.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
	<u>율</u>
	2.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3. 보험급여 결정사항
	4.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
	의 결정사항
	5.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
	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
	<u>결서</u>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준)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 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업무와 재 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 因果關係)는 의학・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다.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 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 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 업무상 질병조사 (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수 있다.

-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 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질병조사를 거부・방 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 다.
-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 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u>신 설></u> 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한다.

⑤ 공단은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 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 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 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질병조사의 대상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 <신 설>

<신<u>설></u>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⑤ 회의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및 보관 기 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 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
 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3. 제116조제5항과 제6항에 의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략) <신 설>

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

-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재해 조사기간 60일 이내에 지급 여 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 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 선지급금"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 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 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 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u>수 있다.</u>
<u><신 설></u>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
	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u>한다.</u>
<u><신 설></u>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
	·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